

최 고 장

수신인

회사 이름	(회사 전화번호 :)
주 소	
대표 이사	

발신인

성 명	
주 소	
연락처	

1. 대법원은 2022. 5. 26.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에 따르면 현재 귀 사의 임금 피크제도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채우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, 그 방법, 정도가 과도하고 적정하지 않아 무효입니다.

2. 귀사가 발신인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미지급된 임금 등 금품 차액, 퇴직금, 퇴직금 기여분 차액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이에 발신인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 전체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모든 금품 차액(퇴직금, 퇴직금 기여분 등 포함)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. 발신인들은 이를 위해 최고서를 보냅니다.

202 . . .

위 발신인 _____(인)